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17회 임시회 (2018. 1. 2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운 영 위 원 회

전문위원 송인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가. 제출일자 : 2018. 1. 22.(월)
- 나. 제 출 자 : 송병길 의원 외 9인

3. 운영위원회 회부일자

- 2018. 1. 23.(화)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38조, 제132조

5. 개정이유

- 마포구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어 자치법규의 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과 법규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의안 심사, 의사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의회 제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통해 의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6. 주요 개정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직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 ▶ 입법·법률고문의 직무를 규정하고,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지 못하도록 함. (안 제2조)

나. 고문의 정원 위·해촉 사항 및 임기(안 제3조~제6조)

- ▶ 입법·법률고문의 위촉은 의장이 구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법·법률 고문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함. (안 제4조)
- ▶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해촉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안 제5조)
-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재위촉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다. 자문요청 등(안 제7조)

라. 입법·법률고문 참가 회의 개최(안 제8조)

마. 입법·법률고문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등 지급 (안 제9조)

바.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하는 소송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위임 (안 제10조)

7.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마포구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어 자치법규의 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과 법규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의안 심사, 의사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의회 제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통해 의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 입법·법률고문의 직무에 관한 사항, 정원, 위·해촉에 관한 사항, 임기, 고문료 비용에 관한 사항 등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미비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 이에 본 조례안은 시대의 급격한 변화와 행정이 전문화되고 복잡한 현실에서 의회의 입법·법률 등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지방의회는 소속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본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서울시 자치구 19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이에 우리 의회도 조례로 제도화 하려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바,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서울시 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정 현황

(2018.1.16 現在)

연번	의회명	제정	시행일	정원	임기	고문료	비고
1	종로구	제정	2008.11	3명 이내	2년	20만원	
2	용산구	제정	2007.6	3명 이내	2년	20만원	
3	성동구	제정	2007.2	2명 이내	2년	15만원	
4	성북구	제정	2017.7	3명 이내	2년	20만원	
5	광진구	제정	2007.3	3명 이내	2년	-	
6	중랑구	제정	2015.10	3명 이내	2년	20만원	
7	강북구	제정	1997.12	4명 이내	없음	15만원	규정
8	도봉구	제정	2003.12	3명 이내	2년	15만원	
9	노원구	제정	1997.1	2명 이내	2년	20만원	
10	은평구	제정	2006.12	3명 이내	2년	15만원	
11	서대문구	제정	2014.11	3명 이내	2년	15만원	
12	양천구	제정	2009.5	2명 이내	2년	20만원	
13	강서구	제정	2012.2	3명 이내	2년	15만원	
14	금천구	제정	2011.3	2명 이내	2년	20만원	
15	동작구	제정	1999.6	3명 이내	2년	15만원	
16	서초구	제정	2002.3	3명 이내	2년	25만원	
17	강남구	제정	2000.3	3명 이내	2년	20만원	
18	강동구	제정	1999.10	4명 이내	2년	15만원	
19	영등포구	제정	2013.9	3명 이내	2년	20만원	
20	서울시	제정	1998.9	20명 이내	2년	20만원	
21	중구	미제정					입법자문운영
22	동대문구	미제정	-	-	-	-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23	마포구	미제정					
24	구로구	미제정	-	-	-	-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25	관악구	미제정	-	-	-	-	
26	송파구	미제정	-	-	-	-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 **조례** : 제정 : 19개구, 미제정 : 6개구 (마포구, 중구, 동대문구, 관악구, 송파구, 구로구)

■ **정원** : 2명 이내 : 4개구, 3명 이내 : 13개구, 4명 : 2개구

■ **임기** : 2년 (18개구), 없음 (1개구)

■ **고문료** : 15만원 : 8개구, 20만원 : 9개구, 25만원 : 1개구, 없음 : 1개구

■ **위촉** : 운영위원회 추천 → 의장이 위촉 : 14개구, 의장이 위촉 : 5개구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